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25. 8. 7.>

허가번호 제 호

영업 허가증

[]동물생산업 []동물수입업 []동물판매업 []동물장묘업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영업장</td><td colspan="2">영업장의 명칭(상호)</td><td colspan="2">연락처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주소</td></tr>
<tr><td>대표자
(법인)</td><td>성명(법인명)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</td><td>연락처</td></tr>
<tr><td>영업
세부내용</td><td colspan="4">※ 동물생산업, 동물수입업, 동물판매업의 경우 생산/취급동물의 종류, 품종, 맹견 취급 여부를 함께 표시
※ 동물생산업의 경우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를 함께 표시
※ 동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의 종류(일반, 알선·중개, 경매 알선·중개)를 함께 표시
※ 동물장묘업의 경우 시설(장례식장, 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시설, 동물수분해장시설, 봉안시설)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허가 면적</td><td rowspan="2">시설
현황
*건물 수
()동</td><td colspan="5">필수시설 면적(단위: ㎡)</td><td rowspan="2">그 밖의 시설
면적</td><td rowspan="2">총 면적</td></tr>
<tr><td>시설1</td><td>시설2</td><td>시설3</td><td>시설4</td><td>계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비고</td><td colspan="7">※ 2개 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수 등을 기재합니다.
※ 방음시설 설치 등 허가 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.
※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을 기재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(동물생산업, 동물수입업, 동물판매업, 동물장묘업) 영업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